

# 1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  
- 편집자 주 -

## 1월2일 건강보험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 오픈

- 2008.1월부터는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청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 (<http://hisimpan.mohw.go.kr>), 국민건강보험공단 (<http://www.nhic.or.kr>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<http://www.hira.or.kr>/요양기관서비스/신청접수란) 3개기관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.
- 먼저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접수하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hw.go.kr>)에서 회원으로 가입 하고, 17개 건강보험공단 지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, 6대공인인증기관(한국정보인증 등),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공인 인증로그인을 해야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- 다만, 심사평가원 처분관련 온라인 심사청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'07년 12월부터 시험운영 중이며 시험 운영 완료후 '08년 1월중에 정상화 할 예정이다.

##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.05%로 결정

- 보건복지부 장관(변재진) 소속 「장기요양위원회」(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)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,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.05%(소득대비 약 0.2% 수준)로 전원 합의하여 결정하였음.

- 건강보험 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.05%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·징수함.
  - ※ 예) 건강보험료 60,000원 납부자 : 60,000원 × 4.05% = 2,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납부(총 62,430원)
-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 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
  -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8천원/1일 으로서 한달(30일) 기준 144만원인바,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하여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    -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%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,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~200만원(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)의 1/3 내지 1/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
    - 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% 부담(비급여 금액 별도)
  -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~90분에 16천원, 방문간호 30~60분에 35천원 등으로 결정
- 장기요양위원회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, 민간의 참여 유도,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음.
  - ※ 장기요양위원회: 가입자 대표, 공급자 대표, 공익대표 각 7인 등 총 22인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

## 약 192만명, 내년 1월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

- 보건복지부(장관 변재진)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를 포함하여 192만여명으로 70세이상 전체노인(297만명)의 61%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
  - 구체적으로는 금번에 수급자로 결정 통보된 131만명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받게 되는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(65~69세 11만명 포함)이다.
  - 다만,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12월 이후 신청자, 이의신청자 중에서 인용되는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12월28일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161만명에게 연금 수급여부를 일체히 통보하고,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간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.
  - 금번 급여결정 통지 대상은 '07.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('37.12.31이전 출생자)이다.

- 금번에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 161만명 중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노인단독 40만원, 부부 64만원)이하여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약 131만명이고, 금융재산등 반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30만명이다.
-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30만명중 약 9만여명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도 선정기준액(노인단독 40만원, 부부 64만원)을 넘었으며, 21만명은 금융재산이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. 금융재산은 선정기준액 구간에서 약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'07년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금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'08년 1월 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,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-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.
-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·재산 조사결과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(등기부, 휴폐업증명서 등)를 제출하면 된다.
-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(www.기초노령연금.kr), 국번없이 129(보건복지 콜센터) 또는 1355(국민연금 콜센터),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.

### ■ ■ ■ 희귀난치성질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이종구)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는 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국관련기관에 배포함.
-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는 환자 및 일반인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6년부터 희귀질환의 증상, 진단 및 치료 등의 내용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, 올해는 만성 콩팥병, 혈우병, 크론병 등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함.
- 교육자료가 필요한 환자 및 일반인들은 희귀난치성질환 Helpline 홈페이지(<http://helpline.cdc.go.kr>)를 통해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고 전국 보건소 및 헬프라인에 등록된 전문병원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음.

### ■ ■ ■ '08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시군구 온라인 보고체계 가동

-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간에 종이문서로 이루어지던 보조금교부신청 등 7종의 보고업무를 '08년 1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'08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간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,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기존 종이문서로 처리하던 보조금교부·정산 등 7종 업무 57개 문서(붙임, 주요보고서식)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구로 온라인 보고하게 됨.
- 개인운영 시설을 포함한 노인·장애인·아동·부랑인·정신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함(경로당·노인교실 등 일부 제외)
- 시·군·구 공무원은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문서 및 각종 현황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됨.
  - ※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·경리·후원금·서비스이력관리 등 시설 내부업무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임.
  - ※ 새올행정 시스템은 행정·복지·노동 등 각종 지자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업무 처리시스템임.
- 또한,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(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) 신설('07.12.14)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구로의 온라인 보고체계 정착을 위한 법·제도적 체계마련도 함께 추진 중임.
-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각종 사업안내에 연계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반영('08.1)하고, '08년도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지표로 시스템 활용율을 포함시킴.
- 또한, 상반기 시스템 활용율을 토대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도·점검을 실시할 계획임.

### ■ ■ ■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변경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.
- 동 서비스 지원대상은 2007년도 37천명에 비해 18% 증가한 44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, 예산은 2007년도 199억원에 비해 28%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.
-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%(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,408천원)

이하의 가정 산모임.

※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

○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(예정)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.

※ 소득확인 서류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

□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·후 건강관리, 가사지원(식사 준비 등), 신생아 건강관리,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함.

○ 쌍태아는 18일, 삼태아는 24일 서비스 제공

○ 특히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서비스 제공('08년도 신규 지원)

□ '08년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(07년 550천원 → 08년 613천원)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동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6천원(서비스 가격 613천원의 7.5%)을 납부토록 할 계획임.

□ 서비스 가격 인상과 병행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장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확대할 방침임.

○ 교육시간 확대: '07년 40시간 → '08년 80시간

○ 교육비 지원 확대: 1,700명에게 총 2억 5천만원(1인당 148천원)

□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불·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,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.

※ 노인돌보미,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'07.4월부터 전자바우처 도입·시행

**■ ■ ■ 건보공단, 2006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최초 발간**

□ 환자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율(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입내원일수/지역내 총 입내원일수)

○ 제주(92.9%), 부산(92.0%)은 높고, 경기(82.5%), 충남(82.7%)는 상대적으로 유출 높아

□ 주요 만성질환의 1천명당 진료인원

○ 고혈압 86.7명, 당뇨 35.8명, 치주질환 247.8명, 관절염 91.1명, 정신및행동장애 37.6명, 감염성질환 180.1명, 간질환 25.6명

○ 시도별 진료비율이 높은 질환: 고혈압(강원 114.0명), 당뇨(전남 46.0명), 정신및행동장애(전북 46.6명)

□ 진료(투약)일수 구간별 진료인원

○ 고혈압환자 433만명중 180일이상 장기투약을 받은 환자는 168만명으로 39% 점유

○ 당뇨환자 178만명중 240일이상 장기투약을 받은 환자는 33만명으로 19% 점유

□ 시군구별 다발생 진료 인원

○ 65세이상 비율 낮은 지역(수원영통, 울산동구, 남구): 입원은 치핵, 외래는 호흡기질환

○ 65세이상 비율 높은 지역(경남남해, 의령군, 경북의성군): 입원은 백내장, 외래는 호흡기질환

□ 의원(치과,한의원포함) 1개소당 평균 1,003명 인원을 담당, 약국은 1개소당 2,287명

○ 의사 1인당 723명, 치과의사 1인당 2,659명, 한의사 1인당 3,641명, 약사 1인당 1,576명

**■ ■ ■ “2007년도 노인주유원 일자리 2,500명 돌파”**

□ 보건복지부(한국노인인력개발원)가 2007년부터 시작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사업이 주유소와 노인의 호응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 고령화시대 “일하는 노인의 좋은 일자리”로 각광을 받고 있다.

□ 2007년 11월,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 12,000여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(전화인터뷰)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,588명의 노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이 가운데 1,244명의 노인주유원이 보건복지부(한국노인인력개발원)가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사업으로 노인전략직종으로 개발해 2007년도에 파견한 인원이다.

○ 노인주유원의 평균연령은 65.4세, 평균 근무지속기간은 3년 1개월로 조사되었고 일일평균 8시간 가량 일하여 월평균 745,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전체 주유소의 35%(4,218개 주유소)가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전체 주유소의 29%(3,506개 주유소)가 노인주유원 인력풀 안에 있는 교육훈련된 노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노인주유원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□ 복지부는 노인주유원 인력뱅크사업을 노인전략직종으로 선정하여 올해 총 2,500여명의 노인들에게 주유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노인주유원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.

**■ 허가에서 유통까지 의약품관리제도 대폭 바뀐다**

-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허가전 품목별 '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'(이하 'GMP'라 한다) 평가,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의약품 표시 개선,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을 1월 15일자로 개정·공포하였다고 밝혔다.
- 금번 개정된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, 소비자의 안전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의약품 “허가후 제형별 GMP 평가”에서 “허가전 품목별 GMP 평가”로 개선하는 등 GMP 규정을 강화하여 의약품 품질수준 향상을 도모하되,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신약부터 적용하고, 전문의약품, 일반의약품,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.
  - ※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, 제조,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
  - 의약품의 직접 용기나 포장 및 낱알모음포장에는 “제조번호, 사용(유효)기한” 기재를 의무화(포장지 교체 등을 위한 업계준비 기간 6~12개월 부여)하여 소비자의 적절한 의약품 사용과 편의를 제고하고, 품목허가권자이외에 제품을 직접 제조한 업체(수입품의 경우 생산국 제조자)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였다.
  - 또한, 완제의약품에 대한 생산·수입실적은 분기별로, 공급내역은 월별 보고로 강화하여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제출로 보고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.
    - 의약품 공급내역 월별보고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보고범위 확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규정이 시행되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■ 금년도 저출산 4.7조원·고령사회 대비 6조원, 총10.7조원 지원키로**

-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.24(목)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, '08년도에 추진할 부처별·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
- 2008년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 8조 9천억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천억원을 포함, 총 10조 7천억원 투입
  - ※ 2007년 7.6조원 보다 3.1조원(40.8%) 증가

- 저출산 대책 분야 : '07) 3.5조원 → '08) 4.7조원 (1.2조원, 34.3% 증)
- 고령화 대책 분야 : '07) 2.6조원 → '08) 4.3조원 (1.7조원, 65.4% 증)
- 성장동력 확보 분야 : '07) 1.5조원 → '08) 1.7조원 (0.2조원, 13.3% 증)

**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**

- 보건복지부(장관 변재진)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07.12.13.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.21. 공포한다고 밝혔다.
  -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, 작업장,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,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하고, 식품의 구매·운반·보관·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.
  - 또한,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℃ 이하에서 영하18℃이하로 조정하고,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도록 하여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하도록 하였다.
  - 한편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이밖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2006.9.27.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특수용도식품, 식빵, 케이크류, 초콜릿류, 잼류, 면류, 레토르트식품 및 음료류 등에 대해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**■ 처방전당 약품목수 평가결과 공개**

- 우리나라 의사는 한 처방전에 평균 4개 이상의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 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원장 김창엽)은 '07년 2분기 '처방전당 약품목수'를 공개하였다.
    -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질병인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등의 처방약 개수는 의원이 4.8개로 종합전문병원의 3.5개보다 약 1.3개 많다.
  - 외래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질환의 평균 약 개수도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의원에서 약 1개 이상 많이 처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평균 4개 이상으로, 선진외국의 2개정도에 비해 많다.
  - 이러한 약의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'07년 10월에 '07년 1분기 호흡기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공개한 바 있다.
  - 심평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약을 처방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 처방전에 '6품목이상 약제 처방비율'을 분석하여 기관별로 통보해왔으며, 그 결과 '6품목이상 처방비율'은 '07년 2분기에 18.08%로 '06년 20.20%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, 이는 처방 약 개수에 영향을 주어 '처방건당 약품목수'가 4.06개로 전년도 4.17개에 비해 감소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.
- 과다한 약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처방될 가능성이 높은 약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.
  - 소화기관용약은 처방전당 약 개수가 많아지면 처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, 외래에서 처방되는 비율이 60%를 넘어 과다사용 가능성이 높다.
    - 특히, 의원의 경우 종합전문병원보다 2배 이상 높아 약개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정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- 처방되는 약 개수가 많아지면 약물이상 반응과 상호작용 등 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약품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합리적인 약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이 필요하다.
  - 2008년부터는 의료기관별로 처방되는 평균 약품목수의 적정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등 급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.
    - 또한, 올바른 약사용에 대한 캠페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과 의료인의 약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해 갈 것이다.
  - ※ 약제평가결과 공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 국민서비스/병원정보/진료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'올바른 약사용'을 위해 발간되는 뉴스레터 '약! 바루 바루'는 홍보관/뉴스레터에서 볼 수 있다.